소관부서 : 기업경제과

제정 2009 · 6 · 3 규칙 제396호 일부개정 2013 · 8 · 7 규칙 제484호 (제명개정) 일부개정 2014 · 7 · 1 규칙 제512호 일부개정 2020 · 9 · 30 규칙 제684호 (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 일부개정 2024 · 12 · 26 규칙 제782호 (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, 제명개정)

#### 제1장 총칙 〈신설 2013 · 8 · 7〉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13·8·7, 2024·12·26〉
- **제1조의2(정의)**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〈개정 2014·7·1, 2020·9·30〉
  - 1. 삭제〈2024·12·26〉
  - 2. "상시고용인원"이란 「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기간제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와「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파견노동자를 제외하고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.
    - 가.「소득세법시행령」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노동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
    - 나. 「국민연금법」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 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
    - 다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62조에 따른 보험료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 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

3. 삭제 〈2024·12·26〉

[본조신설 2013 · 8 · 7]

#### 제2장 산업대상 〈신설 2013 · 8 · 7〉

- 제2조(수상후보자 심사기준) 수상후보자의 선정 기준은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공이 있는 기업인·노동자·기업체·개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선정한다. 〈개정 2013·8·7, 2014·7·1, 2020·9·30〉
  - 1. 우수경영인 부문 : 품질관리, 공정개선, 자원재활용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매출 액 및 수출액 증가를 향상시킨 경영인
  - 2. 우수기업인 부문 : 혁신경영, 신기술 개발, 대규모 투자 등의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업인
  - 3. 모범노사 부문 : 노무관리개선 등을 통해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화합에 크게 기여한 사용자 및 작업장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에 크게 기여한 노동자
  - 4. 지역경제공헌 부문 :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체
  - 5. 모범노동자 부문 :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서 작업장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, 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한 노동자
  - 6. 지역투자 및 고용촉진 우수기업 부문 :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로 고용 증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우수기업체
  - 7. 모범 기업체 및 후견인 공무원 부문 :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 한 기업체 및 기업의 고충사항과 규제완화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 렴하고 이를 해결해 준 공무원
  - 8. 기업사랑 부문 : 친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
- **제3조(추천 제외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및 노동자는 추천대상 에서 제외한다. 〈개정 2014·7·1, 2020·9·30〉

- 1. 동부문의 기 산업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기업체 및 노동자
- 2.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, 직업병 유발,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체
- 3. 추천 당시 노사분규 중에 있는 기업체
- 4. 최근 3월 이내에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 기업체
- 5.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형사사건에 기소 중인 사람
- 제4조(추천 구비서류) ①「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20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자, 후견인 공무원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을 추천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적조 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・7・1, 2020・9・30, 2024・12・26〉
  - ② 제출된 추1. 산업대상 후보추천서 1부(별지 제1호서식)
  - 2. 공적조서 1부(정부표창규정 공적서식)
  - 3.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.
  - 4. 공적증빙서류(사진, 인쇄물 및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 등) 1부.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제5조(수상자 심사) ① 산업대상자 선정은 기업 활동 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〈개정 2013·8·7〉
  - ② 조례 제14조제5호에 따른 산업대상 심의는 수상후보자의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  - ③ 위원회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상 부문과 인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산업대상 부문별로 분류하여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사항·추천기준 및 사회 기여도 등에 대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시상 대상자를 확정한다.
- 제6조(회의)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,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한다.
  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

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・8・7〉

- **제7조(심사결과 통보)**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8·7, 2014·7·1〉
- 제8조(자료제출 요구 등)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·8·7〉
- 제9조(기록 보존) 시장은 산업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, 공적내용, 수상내역 등을 기록 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·8·7, 2014·7·1〉
- 제10조(상장 및 특전)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환경 개선자금 지원, 국내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·8·7〉

#### 제3장 삭제 〈2024 · 12 · 26〉

**제11조** 삭제〈2024·12·26〉

#### 제4장 보칙 〈신설 2013 · 8 · 7〉

**제12조** 삭제〈2024·12·26〉

제13조(시행세칙)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[종전 제11조에 이동 2013·8·7]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3 · 8 · 7 규칙 제484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2014 · 7 · 1 규칙 제512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0・9・30 규칙 제684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24·12·26 규칙 제782호,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「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"을 "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"으로 한다.

제1조 중 "「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"를 "「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」"로 한다.

제1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"「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"를 "「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」"로 한다.

제3장(제11조)을 삭제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을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중 "「이천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"를 "「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」"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[별표 1] 삭제〈2024·12·26〉

### [별지 제1호서식] 〈개정 2024·12·26〉

# 산업대상 후보추천서

(제4조제1항제1호 관련)

							_				
1. 업 체 명						2. 대표자	성 (한 생년	명 <u>자)</u> 년월일	(		)
3. 주 소	본 사							라번호 AX)	(		)
3. 주 소	공 장							타번호 AX)	(	·	
4. 설립일자						자산총액 (전년도말)				백민	만원
6. 회사개요	□ 자가 대 지			m²	ワス	7.종업원수		명			
0. 외자계표	□ 임1	임대 연면적				m²	7.5	省ゼナ	- 1 <sub>2</sub> 0		
8. 주생산품 및 사용용도		· 주생산품 : · 사용용도 :									
9. 공적사항	· 공적사항 (50자 내외 요약)										
	「이천시 기업 활동 지원 조례」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대상 후보 자를 추천합니다.										
						년	월	일			
추천기관 • 단체							(직	인)			
이 천 시	장 귀하										
첨부서류 : 1.공적조서 1부.											
2.공적요약서 1부.											
3.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.											
4.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(사진, 인쇄물, 스크랩 등)											

[별지 제2호서식] 〈개정 2014·7·1〉

# 산업대상 수상자 심의 회의성

(제7조 관련)

구 분	소 속	직 위	성 명	생년월일	비고
00분야					

년 월 일

위와 같이 심의·의결하였음을 통보함.

심	사	위	원	회	
위 원	장				(서명 또는 날인)
부위	원장				(서명 또는 날인)
위	원				(서명 또는 날인)
위	원				(서명 또는 날인)
위	원				(서명 또는 날인)
위	원				(서명 또는 날인)
위	원				(서명 또는 날인)

이 천 시 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 〈개정 2020·9·30〉

# 산업대상포상대장

(제9조 관련)

포상			포상	포상 기업인(노동자, 단체, 개인)								
구 분	일자	분야	분야	분야	분야	분야	분야	훈격	업체명 (단체명)	대표자 (노동자, 개인)	주 소	비고

[별지 제4호서식] 삭제〈2024·12·26〉

[별지 제5호서식] 삭제〈2024·12·26〉